(재)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4월 14일

3. 제안 이유

○ 신기술에 대한 우리도의 기술혁신 거점 조성과 산·학·연·관의 공동참여로 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원근거 규정 마련을 하기 위함.

4. 주요 내용

○ (재)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사업 내용을 정함(제1조, 제2조)

○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재산조성과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(제3조, 제4조)

○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
○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
○ 테크노파크의 업무지도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·지도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
○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수 있도록 함(제8조)

○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(제9조)

5. 검토 의견

○ (재)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의 신기술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연구개발사업,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, 신기술 창업 및 보육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,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효율적인 테크노파크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○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충북테크노파크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법인의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